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12 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O 법령에 근거 없이 권한을 잘못 부여한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15조제2항

- 심의기구에 불과한 위원회의 장에게 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진사항을 점검·관리하도록 한 사항을 집행기관인 군수가 행사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브랜드・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2항 중 "위원장은"을 "군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	제15조(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
한 조치) ① (생 략)	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위원장은</u> 위원회에서 심의·	② <u>군수는</u>
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	
도록 당해기관 · 사회단체에 필	
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추	
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・관리	
하여야한다.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기획감사실장 김 진 영
연 락 처	(033)330-2206